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 번호	363
----------	-----

2024. 1. 25.
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. 16. / 이진환 의원 등 11명
나. 회부일자 : 2024. 1. 16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1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도로의 신설·보수·굴착·교통시설물 설치 및 인·허가 시, 사전에 공사 구간, 시행자, 시행 기간 및 주요 내용을 고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. (안 제1조, 제2조)
- 사전예고 적용 범위, 대상, 사항 및 방법을 규정함. (안 제3조~제6조)
- 의견제출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7조,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조공선)

- '21년 ~ '23년 시행한 도로 개설공사(민원발생 건)는 29건(1,836건)이며, 보수공사(민원발생 건)는 3,990건(12,511건)으로 도로 개설·보수 시

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.

- 도로공사 중 사고가 발생 시 일반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며 뿐만 아니라 위험도로예상시스템(남양주시) 검색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로가 안전하지만 도로 보수가 필요하며, 이동이 많은 도로 경우에는 심각·위험으로 분석됨
-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및 위험 요소로 부터 발생할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
- 본 조례는 도로공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,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정체를 감소와 시민의 불편함을 감소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